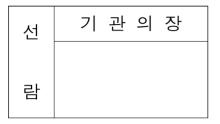


www.jp.go.kr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군 보

제681호 2022년 4월 15일(금)

조 례

-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
-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--- 4
-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----- 6
-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------ 10
-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------ 13

고 시

○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·고시-----15

회					
람					
1					

발행 : 증평군 편집 : 문화체육과 (☎835-4134, 우27927,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)

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.

2022년 4월 15일 증 평 군 수

증평군 조례 제1029호

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증평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: 「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 액. 다만,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2. 여비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한 금액

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.

> 2022년 4월 15일 증 평 군 수

증평군 조례 제1030호

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

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1항, 제102조제2항, 제1 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과의 설치 등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증평군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.

② 사무과에 사무과장, 직원을 둔다.

제3조(정책지원관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(이하"의

원"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- 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 직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· 분석 지원
- 2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 수집 · 조사 · 연구 지원
- 3.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・분석 지원
- 4.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기초 조사 및 자료 작성 지원
- 5. 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회의 토론회 등 개최 지원
- 6.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 지원
-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.
-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- 제4조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공포한다.

2022년 4월 15일 증 평 군 수

증평군 조례 제1031호

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조례에 대한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 효과 등을 분석·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사후 입법평가"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,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- 2. "총괄부서"란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담당부서"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조례 사후 입법평가) 증평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4년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4조(평가대상)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증평군(이하 "군"라 한다) 조례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- 1.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
 - 2. 기관설치·조직운영·업무분장·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
 - 3.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
- 제5조(평가기준)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.
 - 1. 입법 목적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
 - 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
 - 3.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
 - 4.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여부
 - 5. 위원회 · 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
 - 6.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
- 제6조(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) 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

여야 한다.

- 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1.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
 - 3.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2.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 - 3.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.
 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총괄부서의 자치법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- 제9조(용역실시)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

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사 및 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평가결과 반영) 군수는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종합결과보고서 제출)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.

2022년 4월 15일증평군수

증평군 조례 제1032호

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증평군수직"이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등 법률에 따라 증평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.
- 제3조(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)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른 군수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"당선인"이라 한다)을 보좌하여 증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수 있다.
- 제4조(위원회의 운영 원칙 등)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 범위에서 활동하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위원회에 대한 지원, 사무직원의 규모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한다.
 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교수, 연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
 - 2.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
- 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위원회의 직원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9조(자문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행정 및 재정지원 등) 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・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1조(수당 등) 위원과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증평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수당과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 및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)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, 그 결과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. 2022년 4월 15일 중 평 군 수

증평군 조례 제1033호

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

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등) ①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(이하 "구매이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녹색제품 구매품목, 품목별 구매계획 금액 및 목표 구매율
- 2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
- 3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약특수조건, 제도개선 사항
- 4.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② 증평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 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녹색제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후 2개월 이내에 증평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.
- 제3조(녹색제품 유통·판매 등 지원)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·판매를 위해 홍보 또는 필요한 행정·재정지원을 할수 있다.
 - ② 군수는 관내 학교법인, 종교시설, 체육단체 및 기업 등(이하 "학교법인등"이라 한다)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·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4조(녹색제품 구매 협조 요청 등) ① 군수는 학교법인등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- 제5조(정보제공)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법인등에 제공할 수 있다.
- 제6조(교육)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의 물품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7조(포상)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증평군 고시 제2022-31호

소규모 위험시설 지정·고시
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소규모 위험시설 의 지정 및 관리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(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·고시 합니다.

2022년 4월 15일

증 평 군 수

1. 목 적 :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저점검 등 안전관리,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, 긴급 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내용

시 설 명 칭						지 번 정비계			
구	분	명 칭	시군구	읍면동	리	시 작 지 점	끝나는 지 점	연장 (m)	\ (m)
합	계	1 개소							
세	천	남차세천2	증평군	증평읍	남차리	350-1	126	776	2

- ※ 사업시기는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- 3.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: 증평군 경제개발국 건설과
- 4.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: 2022. 04. 15.
- 5. 문의처 : 증평군청 건설과(☎043-835-3843)